

오리협회 TF 1차 회의 개최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SI 긴급행동지침 개정 TF 오리 축사시설 개편 TF

지난 4월 2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TF의 1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TF 회의에는 협회 내부인사로 김만섭 회장, 전영욱 부회장, 박하담 이사, 임종근 지부장, 다솔 송인천 본부장, 정다운 김인호 이사(代 강형구 부장)와 외부인사로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김재홍 원장,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장기윤 교수가 참석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개정의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의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개정의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같은 날 열린 오리 축사시설 개편 TF 1차 회의에서는 ▲축산법 개정 대비 대응방안 ▲오리 축사시설 개편 사업규모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폐율 문제 ▲오리전용 축사표준설계도면 관련 총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협회 내부인사로 김만섭 회장, 전영욱 부회장, 문순금 이사(代 송인천 본부장, 윤준식 본부장, 장민영 팀장), 이용건 이사, 양상현 대의원과 외부인사로 강원대학교 이종인 교수가 참석했다.

먼저 축산법 개정 대비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에서는 ①추후 축산법 개정시 오리농가 가설건축물 사용제한 유예기간을 10~15년 이상의 중장기 기간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②농장주 고령화, 후계농부재, 축사부지 미확보(임대축사) 등으로 시설개편을 할 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폐업보상(3년 이상 소득분)을 건의한다. 또한, ③축산법 개정 후 정부의 지원사업 추진시 오리농가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보조비율이 60%이상 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60% 비율은 국비30%, 지방비30%으로 나머지 40% 비율은 융자20%, 자담20%이다.

전국에 하우스형 오리 축사는 전체 농가의 76.3%인 695농가다. 지자체 조례에 따른 재축·개축 가능여부, 농장부지 보유여부, 축사시설 개편사업 예상 추진규모, 마리수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폐율 문제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에서 허가대상 건축물로 변경시 60%이하 건폐율 적용에 따라 축사면적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하여 폐업보상을 건의하기로 했다.

강원대 연구용역을 통한 오리축사 설계도(8종)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향후 보조사업 추진을 통한 오리축사 건축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계도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TF회의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제4조 관련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구제역·AI·ASF 발생시 가격 적용에 대해 살처분 당일 시세를 보상하는 것이 최선이
나 최초발생 전월시세를 일괄 적용할 경우 시기에서 큰 차이가 나 불합리하다고 보
여 짐에 따라 가격은 '발생한 당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으로 변
경 요구했다. AI의 경우 겨울철 첫 발생 이후 철새가 북상하는 시기(다음해 4월)까
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16과 17년의 경우 6월까지도 발생한 사례가 있다.

제13조 관련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

상한액 조항에 '다만, 살처분 농가가 계약사육 농가일 경우 최근 1개년 농가 월평균
사육비의 80%의 6월분으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살처분으로 인하여
수개월간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계약사육농가에게 통계청 조사 평균가계비 지원
은 현실적인 농가 운영비(인건비, 시설유지비, 지급이자 등)에 크게 못미치며, 위탁
사육농가의 경우 농가 평균사육비의 80%(농가 순수익)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가축질병별 지원 기준액 또한 규모가 클수록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 조정했다.

수정 조정된 기준은 종오리의 경우 상한액은 10천수 이상, 상한액의 80%는 6천수
~10천수 미만, 상한액의 60%는 4천수~6천수 미만, 상한액의 40%는 2천수~4천
수 미만, 상한액의 20%는 2천수 미만이다. 육용오리는 상한액은 20천수 이상, 상
한액의 80%는 15천수~20천수 미만, 상한액의 60%는 10천수~15천수 미만, 상
한액의 40%는 0.5천수~10천수 미만, 상한액의 20%는 0.5천수 미만이다.

제9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다 항의 기준이 '닭 또는 오리'로 되어 있는 것을 닭과 오리의 사육방식의 차이에 따
라 오리를 별도의 항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리농장의 왕겨 또는 톱밥
의 경우 장기간 발효시켜 부숙완료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퇴비사를 설치할
이유가 없고, 완전 부숙된 퇴비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위탁처리가 아닌 자가처리
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항의 기준은 오
리를 제외한 '닭'뿐이며 오리의 경우 라 항으로 신설해 관리한다.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두 번째 퇴비화 시설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오리의 경우 축사내에서 이미
깔짚의 발효 및 부숙완료된 상태이므로 퇴비사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다. 이러
한 특성을 반영해 현행 규칙에 '단, 축사내에서 왕겨, 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
여 건조·발효 및 부숙완료된 경우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part III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개정의견

※ 한국오리협회 개정 요구자료(안) 요약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 4

중점
방역관리지구

지자체별 무분별한 사육제한 예방을 위하여 중앙정부 권한을 추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 요구안을 변경 요구했다.

제19조의 2

가축등에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또한 무분별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으로 방역조치에 있어서의 혼선과 가금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일시이동중지 명령권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동중지 명령권한에 있어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의 일시이동중지 명령 권한을 삭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제48조

보상금

현행 보상금에 관한 법령에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 ▲일시 이동중지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 보상 ▲지자체 반입금지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새로운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신설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이동제한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가축 또는 물품의 소유자 및 부화장
- 일시 이동중지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가축의 소유자 및 부화장
-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SI 발생지역산 가금 반입금지 조치 등으로 손실을 입은 가축의 소유자 및 부화장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육제한 명령 등의 예방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해당 농가나 도축장의 소유자 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의 농장,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가공장 등에서 일하는 관련 종사자들의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경영안정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방조치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하고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장,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가공장 등의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사육제한 등으로 인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보상금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보상금에 따른 법령은 80%의 보상금은 국가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AI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보상금은 100%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지자체의 지급 비율을 없애고 '100%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했다.

제11조 제1항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따른 감액 조건을 '2년 이내에 재발생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농가의 의심축 조기신고 유도를 위하여 살처분보상금 경감기준도 요구했다. 신설 조항은 '라. 임상관찰을 통한 자발적 신고를 통해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된 농가다.'

제12조

생계안정비용 등

현행 예방적살처분 음성판정 농가의 경우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 농가와 동일한 방역 조치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아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방역대 내 농가와 동일한 입식지연 등 피해에도 불구하고 단지 살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 농가와 동일한 방역조치를 적용받으면서 입식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예방적 살처분(음성) 농가는 생계안정자금이 아닌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조정을 요구했다.

제13조

비용의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AI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보상금은 100%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수정을 요구했다. 법 상 '지원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계열업체나 농가에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

관련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본 시행규칙 [별표 2의 4] 개정(2018. 5. 1일 시행)에 따라 육계 또는 육용오리 농가는 일제 입식 및 출하를 준수해야 하며, 휴지기를 14일 미만으로 축소 금지토록 규정함에 따라 생산량이 급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행하더라도 AI특별방역대책기간(8개월)이 아닌 겨울철 4개월(11월 ~ 2월) 동안만 적용하는 수정안을 요구했다.

part IV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의견

※ 한국오리협회 개정 요구자료(안) 요약

제4장
**시료채취,
 송부 및 진단요령**

과학적으로 동별 최소 검사 마릿수가 20수 이므로 추후 축사내 동수가 많은 농가는 검사동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검사 규모별 시료수 기준을 삭제 요청했다.

제7장
**발생확인시
 긴급 방역 조치사항**

닭, 오리 부화장의 종란 폐기 및 부화에 관한 조치를 달리하는 과학적인 근거 제기를 요구하며 특히 종오리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원종오리의 산업적 가치를 감안하여 원종오리 부화장 및 종란의 경우 반드시 닭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13장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 장소 운용요령**

거점 소독의 효율성 제고 및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출하차량(생체운반차량)이 거점소독소를 거칠 경우 분변 등에 의해서 주변이 교차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축장으로 바로 이동하여 소독조치를 하도록 개정 요청했다.

제26장
입식시험 요령

2014년 처음 발생한 H5N8형 A의 경우 닭보다 오리에 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오히려 오리로 입식시험을 하는 것이 입식시험의 목적상 바람직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발생농장이 오리농장인 경우 산란계 중추가 아닌 새끼 오리로 입식시험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산란계 중추를 사육하여 소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정부의 시방역조치에 따라 입식하는 것이므로 시험가축을 시·군에서 대상 농가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요구했다.

제18조제4항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이동제한기간동안 종란을 폐기하고 이동제한 해제 이후 종란을 입란할 경우 부화시까지 4주가 소요됨에 따라 산업적 피해가 크므로 이동제한기간동안 입란 허용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종오리장과 부화장을 함께 운영하는 농장의 경우 종란 등의 외부 반출입이 없는점을 감안하여 종란의 입란을 허용하고 이동제한 해제 이후 바로 초생추 생산·판매가 가능토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SOP 별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입식시험전
청소·소독 등 점검표

환경시료 시 검사에서 음성판정임에도 불구하고 점검시 작은 먼지하나까지도 문제삼으며 입식시험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점검표상의 이행조건이 완료되었을 경우 입식시험을 허용토록 개선을 요구했다.

제19조

소독 등 조치

3항에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에 예방적살처분 음성판정 농가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 요구했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변처리 의무를 강요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제20조

관리지역·보호지역의
방역

닭 부화장 및 종란 뿐만아니라 오리도 산업적 피해를 고려하여 검사 및 위험도평가 등을 거쳐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반출 허용토록 개선해야 한다. 닭, 오리 모두 부화기에 입란하여 새끼오리가 부화되는 과정에서의 시 바이러스 생존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닭, 오리 부화장의 종란 폐기 및 부화에 관한 조치를 달리하고 있어 과학적인 근거를 제기할 것을 요청하는 부분이다. 특히 종오리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원종오리의 산업적 가치를 감안하여 원종오리 부화장 및 종란의 경우 반드시 닭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21조

예찰지역의 방역

이동제한 조치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을 요구했다. 관련조항은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이동제한 해제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이동제한 해제를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제27조

가축의 재사육

제 27조 2항과 3항에 명시되어 있는 관리지역 내 예방살처분 농장이라는 구분에 '양성판정 농가에 한함'을 추가 요구했다. 예방적살처분 음성판정 농가가 양성농가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